

##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 1 장 담보 B 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정의>

「핵물질」 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 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 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 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풀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풀루토늄 25 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 가 250 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 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애에 관련해서 신체장애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오염물 포함합니다.

### 가스사고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신체장애 ₩80,0000,000 재물손해 ₩

위의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면책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기 또는 확장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 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보험료 :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US\$ 또는 YEN)화에 해당하는 외화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 - 스케줄 -

특정구내 :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구내

특정사업 : 대학생 현장실습관련 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애」,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 및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 기초공제 특별약관

#### - 스케줄 -

담보내용

기초공제금액과 적용기준

신체장애배상책임

\$\_\_\_\_\_ 배상청구당

재물손해배상책임

\$\_\_\_\_\_ 사고당

신체장애배상책임과

\$\_\_\_\_\_ 배상청구당

\$\_\_\_\_\_ 사고당

\$\_\_\_\_\_ 배상청구당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_\_\_\_\_사 고 당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애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1 사고당」의 보상한 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애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a. 피해자 1 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애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애」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B.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애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애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애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b.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귀하의 의무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수탁물건 부담보 특별약관

### 업무내용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에 관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1.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거나

2. 소유.임차한 구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